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안 번호	17903
----------	-------

제안연월일 : 2026. 3.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심사경과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210247	윤한홍의원	2025.4.30.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 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9.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 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2025.11.19.)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 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2026.3.10.)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2211099	허성무의원	2025.6.26.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 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9.2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 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2025.11.19.)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 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2026.3.10.)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2026. 3. 10.)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나.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 3. 12.)에서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자유무역지역 생산시설의 노후화 및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주자격 정비, 입주기업체의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을 통한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 국·공유 토지 또는 공장 등의 매각 규정을 정비하여 국·공유 토지 또는 공장 등의 매각을 통한 생산시설 재투자 및 신규기업 유입을 촉진하는 등 자유무역지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공유 토지 또는 공장 등의 매각에 따른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취득자에 대한 입주계약 체결의무 및 취득 토지에 대한 처분제한 기간 등을 신설하여 토지 또는 공장 등의 매각 시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실사용자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입주계약 해지사유를 확대하고, 처분의무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

제금, 처분의무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및 관리권자의 보고·검사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관리권자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는 목적을 법률에 명시하고, 입주기업체의 디지털전환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1조, 제49조).

나. 자유무역지역에서의 통관 및 관세 부과에 있어 입주기업체에 유리한 경우 「관세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확대함(안 제3조).

다. 지식서비스산업 업종의 입주자격 정비, 기준건축면적률 적용의 유연화, 출입국관리 특례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고부가가치 기업의 입주를 촉진함(안 제10조, 제14조, 제48조의2).

라. 토지 또는 공장등의 취득자에 대해 입주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정해진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 해당 부동산을 관리권자에게 양도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마. 입주계약의 해지사유를 구체화하고, 계약 해지 시 토지 또는 공장 등에 대한 처분의무를 명확히 하여 투기적 이용을 방지함(안 제15조).

- 바. 국유 토지 및 공장등의 매각 시 관리권자에게 매각계획 수립의무를 부과하고, 지가상승분의 일부 기부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 사. 공유 토지 및 공장등에 대한 임대·매각 절차와 방식을 정비하고, 제3자 공급 가능성을 확대함(안 제18조).
- 아.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제한 기간 및 방식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분할·지분 양도 제한, 임대료 상한 규정, 관리권자의 비용 징수 권한 등을 새롭게 도입함(안 제25조).
- 자. 처분의무 미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불법 처분으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제26조의3).
- 차. 공동시설 유지비 납입 의무, 관리권자의 보고·자료제출 명령, 현장조사 및 관리·감독 권한을 명문화하여 관리체계를 강화함(안 제28조, 제55조의3).
- 카. 무단 처분 및 미계약에 따른 처분의무 불이행 등에 대해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 감면기준 규정을 신설함(안 제60조, 제70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정·운영함으로써”를 “지정·운영하고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함으로써”로, “지역개발 등을”을 “지역개발과 산업경쟁력강화 등을”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물품의 통관에”를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사항에”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제3호 중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는”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변경”을 “변경(이하 “변경계약”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5항) 중 “정한다”를 “정하고, 제5항의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1.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토지(제25조제7항에 따라 분할된 토지 및

공유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공장·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 다만, 「항만법」 제16조 또는 제61조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외한다.

2.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

⑤ 제1항의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은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날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세관장과의 사전 협의를 위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제5항의 기간 내에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을 제25조제6항에 따른 금액으로 관리권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관리권자가 양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제3항 전단 중 “준용한다”를 “준용하며, 이 경우 “제33조제8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기준건축면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중 “부정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입주계약을”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이나”를 “제1항제2호나”로, “공장·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을 “공장등을”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5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여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을 제25조제6항에 따른 금액으로 관리권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관리권자가 양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종전의 제1호) 중 “처분하는”을 “처분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사업개시의”를 “사업개시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폐업한 경우
3. 제11조제6항(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한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제25조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 또는 공장등을 분할(공유지분으로 분할하여 처분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 임대(전대를 포함한다)하거나 사용하게 한 경우
7. 입주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이하 “사업개시의 신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공장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공장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하는 경우

다만, 제11조제6항, 제15조제6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3.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 신고(이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라 한다) 전에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5.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 토지취득자의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17조제1항 중 “자유무역지역”을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자유무역지역”으로, “공장등에 대하여”를 “공장등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매각계획을 수립하고,”로, “대통령령으로”를 “입주기간 및 수출비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로, “입주기업체에”를 “입주기업체 등 또는 제10조에 따른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입주기업체에”를 “입주기업체 또는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로, “경우 그”를 “경우 그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공고하는 바에 따르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지원업체에”를 “지원업체 또는 제10조제1항제6호의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로, “경우 그”를 “경우 그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가 재

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공고하는 바에 따르며,”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의 원활한 운영과 임대 또는 매각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그 계약에 필요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1. 「공항시설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구역
2.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및 같은 법 제6조제1항 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는 제외한다)

3. 「항만법」 제16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토지

⑤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정상적인 지가상승분(「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상지가상승분”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지가상승분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취득자로부터 이를 기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기부금액에 상응하는 재원을 확보하여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임대 및 매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입주기업체등에”를 “입주기업체등 또는 제10조에 따른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입주기업체에”를 “입주기업체 또는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지원업체에”를 “지원업체 또는 제10조제1항제6호의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의 원활한 운영과 임대 또는 매각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그 계약에 필요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9호의2에”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의2에”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입주 자격이”를 “제10조에 따른 입주 자격이”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 신고 후 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을 “취득한”으로,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로 한정한다”를 “제10조에 따른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위에 건축한”을 “입주기업체등은 제3항에 따라 토지 또는”으로, “관리권자에게”를 “사전에 관리권자에게”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하고, 계약상대방의 입주 자격에 관하여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입주기업체등이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관리권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1.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2. 사업개시의 신고 전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3.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토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다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도인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양수인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6항, 제15조제6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입주기업체등이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제3항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이나 제10조에 따른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임대료 또는 사용료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입주기업체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나누어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거나 지분을 나누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시설구역등”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입주기업체”는 “입주기업체등”으로, “산업용지”는 “토지”로, “관리기관”은 “관리권자”로 본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양도 또는 분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 조 제목 중 “사용”을 “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자가 제11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으로, “처분 또는 사용하여야”를 “처분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제2호에”를 “제1호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3호에”를 “제1항제2호에”로, “경우의 양도가격에 관하여는 제25조제5항을”을 “경우의 양도금액은 제26조제6항을 준용하며, 관리권자가 양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을”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나 제10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할 것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이행강제금) ① 관리권자는 제11조제6항, 제15조제5항·제6항, 제25조제1항·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내 소유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할 의무(이하 “이 법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할 의무”라 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이행을 명할 수 있고,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 또는 양도하여야 할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재산가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관리권자는 이 법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할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3(과징금) ① 관리권자는 제11조제6항, 제15조제5항·제6항, 제25조제1항·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 또는 양도한 자에게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관리권자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

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관리권자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 과징금 또는 가산금의 부과, 납부, 징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입주기업체등으로부터”를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공장등의 소유자(제25조제3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입주기업체등으로부터”로 한다.

제37조제4항 중 “제209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9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제4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로 한다.

제4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그 내국물품의”를 “반출되는 물품 중 원재료로 사용된 외국물품의”로, “가격을 제조·가공·조립·보수한 물품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를 “가격에 상응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9조제5항제1호의 경우 제29조의2에 따른 사용·소비 신고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재료인 외국물품등에 대한 과세

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9조의2에 따른 사용·소비 신고를 할 때의 그 원재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제45조제1항 중 “「주세법」 제31조제1항제1호,”를 “「주세법」 제20조제1항제1호,”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호”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호”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한 입주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9조제1항 중 “인력양성을”을 “인력양성 또는 디지털전환을”로 한다.

제5장에 제49조의3 및 제4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3(자유무역지역의 친환경·첨단화 지원 등) ① 관리권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 등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과 같은 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

제49조의4(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에 있거나 자유무역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장에 제5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3(보고 및 검사 등)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 또는 공장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입주기업체등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 또는 공장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입주기업체등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또는 지도·감독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1의2. 제15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1의3.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1의4. 제26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제70조제2항 중 “제15조제5항·제6항 또는 제26조를”을 “제11조제6항, 제15조제5항·제6항, 제25조제1항·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 각 호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바에”를 “부과기준 또는 감면기준에”로 한다.

13.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료 및 사용료

를 받은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권자의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조(입주 자격) 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1의2. (생략)
2. 제조업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의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비중 및 수출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다만,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수출비중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의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수출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제10조(입주 자격) ① -----

1. 1의2. (현행과 같음)

2. -----
-----제4호 및 제5호에-----

3. -----
-----제4호 및 제5호에-----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및 계약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세관장과의 사전 협의를 위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제5항의 기간 내에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을 제25조제6항에 따른 금액으로 관리권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관리권자가 양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

----- 정하고, 제5항의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

② 관리권자는 입주기업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관리권자가 시정을 명한 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입주기업체등이 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신설>

3. 4. (생략)

5. (생략)

6. 폐업한 경우

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한 경우

② -----

-----산업통상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 <단서 삭제>

1. 2. (현행과 같음)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5. (현행과 같음)

6. 제25조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 또는 공장등을 분할(공유지분으로 분할하여 처분하려는 경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생 략)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외국물품,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 신고를 한 제29조제1항제2호·제3호의 물품,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관세영역에서 자유무역지역 안

우를 포함한다)·임대(전대를 포함한다)하거나 사용하게 한 경우

7. 입주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이하 “사업개시의 신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공장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공장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하는 경우

③ (현행과 같음)

④ -----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

<신 설>

- 1. 제5항에 따라 양도되지 아니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는 경우
- 2.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에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신 설>

- 3.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에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신 설>

⑦ (생략)

제17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① 관리권자

양도하여야 하며, 관리권자가 양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 1. 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 2. -----
-----처분
하려는-----

<삭 제>

- 3.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 신고(이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라 한다) 전에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 4. 사업개시의-----

- 5.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 토지취득자의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① -----

는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하여 그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의 관리·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신 설>

<신 설>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자유무역지역-----
-----공
장등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 경
우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입주기간 및 수출비중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입주기업체등 또는
제10조에 따른 입주 자격이 있
는 제3자에-----
-----. 이 경우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의 원활한 운영과 임대 또는 매각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그 계약에 필요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1. 「공항시설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구역
2.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및 같은 법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는 제외한다)

<신 설>

②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임대료 또는 매각가격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44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필요하면 그 가격을 외화(外貨)로 표시할 수 있다.

③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3. 「항만법」 제16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토지

<삭 제>

③ -----
입주기업체 또는 제10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

-----경우 그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공고하는 바에 따르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상지가상승분”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지가상승분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취득자로부터 이를 기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기부금액에 상응하는 재원을 확보하여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임대 및 매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관리권자와 협의를 거쳐 입주기업체등에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8조(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① -----

-----입
주기업체등 또는 제10조에 따
른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원업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20조(임대료의 감면 등) ①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9호의 2에 따른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

-----.

④ -----
-----지원업체 또는 제10조
제1항제6호의 입주 자격이 있
는 제3자에-----

제20조(임대료의 감면 등) ① ---

-----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9
호의2에-----

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아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5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제한) ① 입주기업체등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에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취득한 토지(이 조 제6항에 따라 분할된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권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제한) ① 입주기업체등이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관리권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1.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2. 사업개시의 신고 전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3.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토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다만,

여금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계약 당사자는 입주기업체등이나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로 한정한다. <단서 신설>

④ 제3항의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위에 건축한 공장등을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때에는 관리권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생략)

⑥ 입주기업체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입주기업체등은 제3항에 따라 토지 또는-----

사전에 관리권자에게-----
--신고하고, 계약상대방의 입주 자격에 관하여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⑤ 입주기업체등이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제3항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이나 제10조에 따른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임대료 또는 사용료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삭 제>

다.

<신 설>

⑦ (생략)

<신 설>

<신 설>

⑦ 입주기업체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나누어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거나 지분을 나누어야 한다.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시설구역등”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입주기업체”는 “입주기업체등”으로, “산업용지”는 “토지”로, “관리기관”은 “관리권자”로 본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제한, 양도 또는 분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①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할 것. 다만, 입주기업체를 인수 또는 합병한 자가 입주 자격을 갖추고 당초 계약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2. 제1호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할 것

3. 제2호에 따라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

제26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등)

① -----

-----자가 제11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하여야-----.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나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할 것

<삭 제>

2. 제1호에-----

권자에게 양도할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가격에 관하여는 제25조제5항을 준용한다.

<신 설>

② 제1항제2호에-----
-----경우의 양도금액은 제26조제6항을 준용하며, 관리권자가 양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을-----
---.

제26조의2(이행강제금) ① 관리권자는 제11조제6항, 제15조제5항·제6항, 제25조제1항·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내 소유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할 의무(이하 “이 법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할 의무”라 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이행을 명할 수 있고,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 또는 양도하여야 할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재산가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

<신 설>

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관리권자는 이 법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할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3(과징금) ① 관리권자는 제11조제6항, 제15조제5항·제6항, 제25조제1항·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 또는 양도한 자에게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관리권자는 과징금 납부의 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관리권자는 과징금 납부의 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 과징금 또는 가산금의 부과, 납부, 징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공동시설의 유지비)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안의 공동시설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유지비”라 한다)을 입주기업체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28조(공동시설의 유지비) ① --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공장등의 소유자(제25조제3항에 따라 토

제45조(관세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① 입주기업체가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입신고한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주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개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출하거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수출 또는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등을 면제하거나 환급한다.

② · ③ (생략)

<신설>

한 경우에는 제29조의2에 따른 사용·소비 신고를 할 때의 그 원재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제45조(관세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① -----

----- 「주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호-----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8조의2(「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한 입주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

제49조(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및 인력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신 설>

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9조(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 ① -----

--인력양성 또는 디지털전환을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9조의3(자유무역지역의 친환경·첨단화 지원 등) ① 관리권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등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과 같은 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

<신 설>

제49조의4(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에 있거나 자유무역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등에 대하여

<신 설>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55조의3(보고 및 검사 등)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 또는 공장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입주기업체등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
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 또는 공장등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입주기업체등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
와 감독을 할 수 있고, 소속 공
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
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
고 및 검사 또는 지도·감독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신 설>

<신 설>

<신 설>

2.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2의2. ~ 6. (생 략)

제70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제15조제5항·제6항 또는 제26조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벌칙) -----

-----.

1.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1의2. 제15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1의3.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1의4. 제26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삭 제>

2의2. ~ 6. (현행과 같음)

제7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1조제6항, 제15조제5항·제6항, 제25조제1항·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 각 호를-----

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2. (생략)

<신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제2항, 제3항제1호 및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관리권자를 말

-----.

③ -----
-----.

1. ~ 12. (현행과 같음)

13.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료 및
사용료를 받은 자

④ -----
-----.

1. ~ 4. (현행과 같음)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의3 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의3 제2항에 따른 관리권자의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자

⑤ -----

-----부과기준 또는 감면 기준에-----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
---------------	-----------------